

## 디스플레이 기술교육센터 규정

### 제 1 장 총 칙

**제 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디스플레이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을 통한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호서대학교 디스플레이기술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조 (직무)** 본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디스플레이 기술교육
2. 교육프로그램 및 교구재 개발사업
3.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위한 산·학·연 협동체제 구축
4. 디스플레이 공정기술 교육·자원을 위한 시설·장비 확충사업
5. 기타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### 제 2 장 조직 및 구성

**제 3조 (조직)** ① 센터에는 장비기술팀, 부품·재료기술팀, 측정·평가기술팀,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다.

② 장비기술팀은 소자공정·장비기술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구재 개발과 교육을 담당한다.

③ 부품·재료기술팀은 부품·재료기술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구재 개발과 교육을 담당한다.

④ 측정·평가기술팀은 측정·평가기술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구재 개발과 교육을 담당한다.

⑤ 행정지원팀은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.

**제 4조 (구성)** ① 센터에는 소장 1인, 각 팀에 팀장 1인을 둔다.

② 소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팀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,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센터에는 참여교수, 연구원, 연구보조원, 기술원 및 행정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, 임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제 3 장 운영 위원회

**제 5조 (구성 및 회의)**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센터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 6조 (심의사항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주요사업계획 및 운영
2. 예산 및 결산
3. 규정의 개정
4.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 제 4 장 평 가 위 원 회

- 제 7조 (평가위원회)** ① 센터의 주요사업 진행상황 평가와 주요사업 성과의 분석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평가위원회는 소장과 소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-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.

## 제 5 장 재 정

- 제 8조 (재원)** 센터의 재원은 정부, 지방자치단체, 테크노파크 및 본교의 지원금, 산업체 및 개인의 출연금, 각종 연구비, 교육훈련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제 9조 (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등 징수)** ① 소장은 기자재의 사용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.
- ②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등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.
- ③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등의 수입은 사립대학(교)비 회계관리규정에 의한다.
- 제 10 조 (회계연도)** 센터의 회계연도는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
## 제 6 장 보 칙

- 제 11조 (운영세칙)** 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